1. 개정이유

최근 민간 헬리콥터 사고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헬리콥터 안전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위험 경감 및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 일환으로 운항증명 대상인 헬기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지상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외부적재 화물운항 시 지·상의 현장안전유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업무에 투입하도록 함(안 9.1.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4호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HELICOPTERS) 일부개정안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HELICOPTERS)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9.1.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1.5 현장안전유도요원 교육훈련

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외부적재 화물운항을 위한 현장안전유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 하여금 현장안전유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항공기사용사업자는 현장안전유도요원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안전유도업무를 위탁시킨 경우에는 위임받은 조직이 수립한 현장안전유도요원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동 프로그램의 이행여부에 대해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현장안전유도요원 교육훈련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화물공수장비 보존관리 및 운용「」

나) 화물의 중량, 강도, 크기 및 무게중심을 고려한 탑재 및 배치

다) 화물의 결속 및 해제

라) 화물공수지역에서 항공기의 화물유도, 적재 및 하역

마) 비행중 공수장비 고장 시 조치

바) 지상안전저해요인 제거

사) 항공기 유도

아) 임무 항공기와 통신 절차

2) 현장안전유도요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기록의 유지 및 보관은 제4장 2.17.2.2.5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9.1.5 현장안전유도요원 교육훈련 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외부적재 화물운항을 위한 현장안전유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 하여금 현장안전유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항공기사용사업자는 현장안전유도요원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안전유도업무를 위탁시킨 경우에는 위임받은 조직이 수립한 현장안전유도요원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동 프로그램의 이행여부에 대해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현장안전유도요원 교육훈련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화물공수장비 보존관리 및 운용 나) 화물의 중량, 강도, 크기 및 무게중심을 고려한 탑재

	및 배치 다) 화물의 결속 및 해제 라) 화물공수지역에서 항공기의 화물유도, 적재 및 하역 마) 비행중 공수장비 고장 시 조치 바) 지상안전저해요인 제거 사) 항공기 유도 아) 임무 항공기와 통신 절차 2) 현장안전유도요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기록의 유지 및 보관은 제4장 2.17.2.2.5을 준용한다.
부 칙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